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57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22. 8. 8. ~ 2022. 8. 22.(15일)
-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박인호	1948.04.15.	0178200274100002835	2,000,000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6 길
2	이정자	1938.08.19.	0178200274100002837	5,000,000	대구 북구 내곡로 15
3			0178200274100002838	5,000,000	
4			0178200274100002839	131,000,000	
5			0178200274100002840	180,000,000	
6			㈜리플아이	170111-0292***	
7	조민호	1979.03.01.	0178200274100005878	18,000,000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용대길
8	김재경	1969.12.23.	0178200274100003995	31,860,000	주소 불명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9	석광만	1966.07.27.	0178200274100004001	31,860,000	대구 북구 내곡로
10	성대엽	1971.05.08.	0178200274100002830	31,86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1	손성재	1962.07.04.	0178200274100003997	31,860,000	경북 구미 봉곡서로 11 안길
12	오성국	1979.10.25.	0178200274100002828	19,116,000	주소 불명
13	이경호	1964.11.15.	0178200274100003998	31,86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4	정선덕	1960.02.18.	0178200274100003994	31,860,000	대구 달서구 송현동 1 길
15	김현덕	1976.04.29.	0178200274100002832	31,860,000	주소 불명
16	박윤옥	1974.10.24.	0178200274100004002	31,860,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 12 길
17	우성철	1980.02.10.	0178200274100004004	31,860,000	제주 서귀포시 516 로
18	이상열	1970.08.03.	0178200274100004003	31,860,000	주소 불명
19	이필수	1966.04.10.	0178200274100004008	31,860,000	대구 동구 아양로 46 길
20	김순란	1961.06.16.	0178200274100004015	31,860,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398
21	라상택	1967.01.23.	0178200274100004014	31,860,000	대구 서구 큰장로 13 길
22	엄성열	1988.04.21.	0178200274100004016	31,860,000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구남골길
23	김교수	1960.05.08.	0178200274100004025	31,860,000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